

4. 建設技術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26號 1993. 6. 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책임시공감리자의 자격기준)

영 제5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설공사의 책임시공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동 자격을 취득한 후 감리전문회사

• 건설업체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
통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
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되어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재
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에서 3주이상
공사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동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지방자

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사에서 해당기술분야의 건설공사
에 대한 설계·시공·검사·시험·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감리전문회사는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는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경력사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다)를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감리자의 상주계획) ①감리전문
회사는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설공사의 현장에 상주하게 하는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공사
진도별 상주인원 및 상주에 관한 계획
을 감리업무의 착수전에 미리 발주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상주계획이 당해 전설공사의
시공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의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당해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공사규모에 따른 감리자의 적정상 주인원 및 상주계획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와 보유기술자중 고급기술자의 이력서
2.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현황에 관한 서류(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2의2.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아닌 고급기술자의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와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20조종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를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휴·폐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서식명 “감리전문회사등록 사항변경신고서”를 “감리전문회사휴·폐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변경년월일”란을 “변경년월일(휴·폐업일)”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90호)으로 종전에 기술사 및 건축사만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할 수 있던 건설인력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도 건설공사를 책임감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동 세부적인 요건을

정하고, 아울러 감리자의 공사현장상주의무에 관한 사항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 자격취득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하고 건설기술교육원에서 3주이상 공사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와 동 자격취득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검사·시험·공사감독·감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등 현장경험이 많은 자를 건설공사의 책임시공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함(제15조의2).
- 나. 종전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감리자의 수를 책임감리자를 포함하여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3인이상, 전면책임감리의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리회사가 감리용역착수와 동시에 감리자의 수와 공사진도에 따른 감리자의 상주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직된 감리기준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다. 감리회사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최초로 등록할 때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를 각각 간소화하여 행정규제완화에 기여하고 민원소지를 줄이도록 함(제18조)

<건설부 제공>